



전주우림중학교

...학교비전...
배려와 존중으로 함께
성장하는 우림인

아이들이 행복한 학교/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합니다.

가정통신문

www.woolim.ms.kr

제 2024-23호

2024. 3. 8.(금)
인성인권부
이인성 ☎ 220-4933

청소년 시간제 근로 시 유의사항 안내

청소년 시간제 근로 시 유의해야 할 사항!

1.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합니다.
-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 및 고용 금지업소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.

청소년 유해업소

- ①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
-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

유흥업소, 단란주점, 비디오방, 노래방, 전화방, 숙박업소, 이발소,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, 만화 대여점, 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(소주방, 호프, 카페 등), 여서가족부 고시업소 등

*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,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.

2. **만 15세 이상**의 청소년만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.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업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(근로기준법 시행 2021.11.19.제64조)
3. 시간제 근로를 지원할 때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(근로기준법 시행 2021.11.19.제66조)
4. **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**
(근로기준법 시행 2021.11.19.제69조)

- 야간 근로의 경우

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.

단, 야간근무는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.

(근로기준법 시행 2021.11.19.제70조 2항)

다만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,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
정당한 시간제 근로로 인정이 되는 예

A라는 학생이 월~금요일(매일 5일간) 22:00~23:00까지 편의점 야간연장근로.(1주에 5시간 한도)

정당한 시간제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 예

B라는 학생이 월요일 22:00~03:00까지 편의점 야간연장근로.(1일 1시간이 야간연장이 가능하므로 인정이 되지 않음.)

2024년 3월 8일

전주우림중학교장 **최 동 성**

